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5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김현정 · 김문수 · 최민희
김남근 · 진성준 · 강준현
이정문 · 민병덕 · 오기형
김 윤 · 이강일 · 박정현
박홍배 · 복기왕 · 황명선
권향엽 · 송옥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하고,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라 한다)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3. 사업구조 개선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의 제목 중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제163조”를 “제163조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제19호의8 중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u> <u>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u> <u>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 대비</u> <u>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u> <u>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이 2개</u> <u>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u> <u>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u> <u>계획서(이하 “기업가치 제고계</u> <u>획서”라 한다)를 정기총회 1주</u> <u>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u> <u>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u> <u>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가</u> <u>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u> <u>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u> <u>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u> <u>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u> <u>있다.</u> <u>1.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u> <u>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u> <u>의 처분 계획</u>

	<u>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u> <u>3. 사업구조 개선계획</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u>
<u>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생략)</u>	<u>제161조의3(자료요구권 등) (현행 제161조의2와 같음)</u>
<u>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생략)</u>	<u>제163조(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공시) ① (현행 제6 조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 ----- ----- -----

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의7. (생략)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0. ~ 64.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8. (생략)

<신설>

39. ~ 49. (생략)

-----제163조 제

1항-----

제446조(벌칙) -----

1. ~ 19의7. (현행과 같음)

19의8. -----

-----제161조의3-----

20. ~ 64.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1. ~ 38. (현행과 같음)

38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9.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